

KISTEP 2018 청탁금지법 상담내역 공개

일련 번호	상담일	상담내용		신고여부	(신고시) 처리내용	
		분류	세부내용		처리일자	처리결과
1	5.03	청탁금지법	시민참여 사업홍보를 위해 언론사에 광고를 실을 때 청탁금지법 상 주의해야할 것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됨. 양자간 정당한 대가 관계(반대급부)가 있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가능
2	5.08	청탁금지법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동기인 타 부처 공무원의 경조사비 지급범위 문의	해당없음		5만원 이내 가능(화환은 10만원)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있을 특정시기(감사 등)에는 금지
3	6.15	청탁금지법	사례금 공지를 받은 바 없었는데, 사례금을 준다고 하였을 경우에 관한 문의	해당없음		사례금 수수예정 사실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 외부강의등 보완신고 가능
4	7.9	청탁금지법	퇴직예정공직자에게 각 5만원씩 걷어 5만원 이상의 선물을 드려도 되는지 여부	해당없음		5만원 이내의 선물은 가능하나 금전은 불가능/ 단 퇴직자에게는 가능
5	9.4	청탁금지법	직무 관련 있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공직자에게 5만원 범위 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는지 문의	해당없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제외되므로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음
6	9.11	청탁금지법	외국에서 출장중에 외국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는지	해당없음		속인주의를 따르므로, 대한민국 국적 공직자가 외국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지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됨. 가액범위 내 수수시 위반 아님
7	9.11	청탁금지법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고, 즉시 반환하고 신고한 경우 선물 제공자는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여부	해당없음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에게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선물을 제공한 경우 실제 공직자의 수수 여부와 상관없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임 (즉시 반환하고 신고한 공직자는 처벌되지 않음)